

#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의장

제1624호 2021. 9. 27(월)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7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 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 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0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 1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 1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4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 2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5호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2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 3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 37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899호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3

## 차 례

###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 44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 4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902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4

###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39호선, 소로1-3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58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8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7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0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117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7호

###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 중 “법관”을 “판사·검사·변호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관계있는”을 각각 “관계 있는”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을 말한다.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

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

1. 구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2. 구 직속기관, 출장소
3.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
4. 구 출자·출연기관
5. 구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6. 구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수립하고, 해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 청산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제잔재 실태조사
2.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
3.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
4.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일제잔재 용어의 정비
5. 역사인식 확립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잔재 활용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주일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3. 일제잔재 청산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심의
5. 일제상징물 행위제한 심의
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 부서장 및 문화재 업무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89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평가”를 “평가,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을 지급할”을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열거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물품을 제작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청년의 날) ①구청장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2조에 따른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청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년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청년 또는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서구 청년상을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원 및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등을 통해 공공조달에 있어 사회적 가치의 구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협동조합

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다목에 따른 마을기업

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말한다.

3. “희망기업(사회적약자기업)”이란 기업규모 및 가격 경쟁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의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소기업을 말한다.

4.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증시하는 가치를 말한다.

5.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사회적 가치에 대한 기업의 이행 책임을 말한다.

6. “공공조달”이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역할 및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조달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업 경영시 이행하여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구 의회사무국
3. 구 직속기관,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
4. 구 소속 공기업 및 산하기관
5. 구 출자·출연기관

②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기관은 공공조달 시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우선구매에 관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이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공공조달 지침의 이행) ①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조달 지침은 사회적경제기업 및 희망기업에 대한 진입기회의 확대, 노동자의 권리보호, 법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발주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내용으로 한다.

③ 발주 및 계약부서 담당자는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공공조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①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기업과 희망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공공조달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상과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사회적경제기업간 제한경쟁이 가능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제8조(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 ① 구청장은 공공조달 사업수행자 선정 시 계약내용, 규모, 입찰참가 예상기업 등을 고려하고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사업수행자 선정 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 기업은 사회적책임 평가의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공고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업수행자 선정결과의 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내용의 해석이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입찰참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입찰참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부정행사되거나 거짓서류인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낙찰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자의 권리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 노동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고, 노동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지가 반영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노동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필요시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 서약서상의 노동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발주계획 및 계약진행 과정을 구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구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발주부서가 계약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1호

###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건위생물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청소년수련시설

## 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토요일이 포함된 1주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주간 기간 동안 청소년에게 인천광

역시 서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사용료 등을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3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4호

###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5호

### 인천광역시 서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등 디지털 성착취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제작 또는 가공하거나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6호

### 인천광역시 서구 서로이음 아이돌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온종일, 온마을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로이음 아이돌봄”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이 돌봄 통합 체계 명칭을 말한다.
2. “돌봄 아동”이란 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을 말한다.

3. “돌봄”이란 초등학교 등의 정규학습 시간 외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돌봄 지원”이란 돌봄 아동에게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급식·간식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5. “돌봄 시설”이란 돌봄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구, 기관, 단체, 개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돌봄교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초등학교 이하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목표
2. 돌봄에 관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돌봄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돌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사업
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5.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6. 돌봄 인력 양성 과정 지원 사업
7. 돌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조사 사업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①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휴식
2. 아동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체험활동
3. 방과 후 급식·간식
4.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보조 활동
5. 감염병 확산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아동에 대한 일시·긴급 돌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② 구청장은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돌봄의 우선 제공)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 아동

2.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적으로 방과 후 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아동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설치 시 안전·환경 및 교통편의,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2. 초등학생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곳으로 선정

3.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우선 설치 검토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으로 선정

② 지역 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아동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험 및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③ 관계 공무원은 돌봄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로이음 아이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 계획 및 추진사업 심의·자문
2. 돌봄 시설 안전 및 아동보호 협력 체계 구축
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4.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5.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
6.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인천광역시 서부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인천광역시 서부소방서의 시설 안전 관리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부서의 장
5. 구 소속 관계 부서의 장
6. 돌봄 시설 운영 대표자
7.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 돌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협의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 위원 임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의 정기 회의를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1명을 두되, 돌봄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8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돌봄 시설 관계자의 교육 및 역량강화) 구청장은 돌봄 관계자의 전문성 향상 및 우수사례 견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지도·감독)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예산이 지원되는 돌봄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구청장은 돌봄 시설 확충 및 민간 협력 돌봄 사업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7호

##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청년의 새로운 문화 창출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문화예술인(이하 “청년 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 문화예술 단체(이하 “청년단체”라 한다)”란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

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3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와 관련한 청년 예술인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5조의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청년 문화예술 발굴·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청년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

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고, 관계기관 등에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 청년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교육·공연·홍보 활동 재정 지원
2.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공간과 공연·전시 공간 등 문화 공간의 확보 및 조성 지원
3.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기획·창작 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4.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
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
6. 청년 문화예술 기획 등 청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 지원
7.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 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공동체 활성화 지원
8. 청년 예술인의 자립기반 구축 지원
9. 재난 위기 시 청년 예술인이나 청년단체의 구호와 활동 안전망 구축 지원
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8호

###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적립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7조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의무예치액”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3. “사용가능액”이란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이자 등으로 발생한 운용수입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의 대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4조(중전의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매년 조성된 기금을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을 의무예치액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라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

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④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공공분야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관 등 안전시설 설치
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3.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4. 재난관련 장비 및 물품 구입
5.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6.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9. 재난피해시설(서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0.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11.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12.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
13.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14.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활동
15.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이하 “대피명령 등”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용자
16.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
1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8호”를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로 한다.

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

제10조의 제목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9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업무”로,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的人数가 특정 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안전총괄과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제정책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 가정보육과장
2. 위촉직 위원 : 방재 관련 분야,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촉직 위원的人数는 2년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조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제1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899호

###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담배소매인지정”을 “담배소매인지정”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0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주차장의 이용제한) ① 구청장은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1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 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및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전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전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출석회의 및 화상회의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그 예외를 인정하여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1년 9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902호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에게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업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건강증진사업 참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 사업의 발굴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 사업추진 기관 및 단체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 의료 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해당직 재임 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 없이 위원을 위·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할 때
2.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때

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

4.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방문 자문) 인천광역시 서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거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을 요하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개별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및 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건강증진과장이 되며, 서기는 건강증진담당 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6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39호선, 소로1-312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460(2020.12.2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명: 중로2-939호선, 소로1-312호선, 사업명: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 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계획과 ☎560-476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1. 9.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1. 변경사유

- 토지 이동(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 2.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불로동 일원

### 3.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939호선, 소로1-312호선)
- 명칭 : 인천 대곡동~불로지구 연결도로

## 4.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구분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br>(m)           | 연장<br>(m) | 면적<br>(㎡) | 비고                                |
|----|----|----|----|-----|---------------------|-----------|-----------|-----------------------------------|
| 당초 | 도로 | 중로 | 2  | 939 | 15.5<br>(15.5~60.0) | 950       | 42,145    | 토지이동<br>(분할)에<br>따른<br>토지조서<br>변경 |
| 변경 | 도로 | 중로 | 2  | 939 | 15.5<br>(15.5~60.0) | 950       | 42,205    |                                   |
| 당초 | 도로 | 소로 | 1  | 312 | 11<br>(11.0~22.0)   | 95        | 1,470     |                                   |
| 변경 | 도로 | 소로 | 1  | 312 | 11<br>(11.0~22.0)   | 95        | 1,508     |                                   |

## 5.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 없음)

- 성명 :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 (만수동)

## 6.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 없음)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12. 31.

##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따로 붙임

##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인천 대곡동~블로지구 연결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1  | 당초 | 대곡동 | 687    | 천  | 31,810 | 387   | 국토교통부                   | 국       |                                      |           |           |    |
| 1  | 변경 | "   | 687-18 | 천  | 373    | 373   | 국토교통부                   | 국       |                                      |           |           |    |
| 2  | 당초 | "   | 373-5  | 답  | 1,635  | 5     | 인천광역시                   | 공       |                                      |           |           |    |
| 2  | 변경 | "   | 373-16 | 답  | 1      | 1     | 인천광역시                   | 공       |                                      |           |           |    |
| 3  | 당초 | 블로동 | 54-8   | 답  | 2,203  | 815   | 인천광역시                   | 공       |                                      |           |           |    |
| 3  | 변경 | "   | 54-20  | 답  | 822    | 822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  | 당초 | "   | 54     | 답  | 378    | 29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 ****      | 김*자     |                                      |           |           |    |
| 4  | 변경 | "   | 54-11  | 답  | 28     | 28    |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대로 ****      | 김*자     |                                      |           |           |    |
| 5  | 당초 | "   | 54-1   | 답  | 2,356  | 1,050 |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        | 문*자     |                                      |           |           |    |
| 5  | 변경 | "   | 54-12  | 답  | 1,053  | 1,053 | 서울시 도봉구 수유동 ****        | 문*자     |                                      |           |           |    |
| 6  | 당초 | "   | 54-2   | 답  | 3,801  | 1,736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 한*희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한*문     |                                      |           |           |    |
| 6  | 변경 | "   | 54-13  | 전  | 1,748  | 1,748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 한*희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한*문     |                                      |           |           |    |
| 7  | 당초 | "   | 54-3   | 전  | 3,023  | 1,182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문*일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지상권 |    |
| 7  | 변경 | "   | 54-14  | 전  | 1,186  | 1,18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8  | 당초 | "   | 54-4   | 전  | 5,044  | 1,801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문*갑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8  | 변경 | "   | 54-15  | 전  | 1,804  | 1,804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문*갑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9  | 당초 | "   | 54-5   | 답  | 2,534  | 828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 김*중     | 인천시 서구 청라에 메탈드로102번길 12 (연희동, 서인천농협) | 서인천농협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9  | 변경 | "   | 54-16  | 전  | 832    | 832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       | 김*중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10 | 당초 | 불로동 | 54-6   | 답  | 2,926 | 874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 배*순     |                      |           |           |    |
| 10 | 변경 | "   | 54-17  | 답  | 873   | 873   |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       | 배*순     |                      |           |           |    |
| 11 | 당초 | "   | 54-7   | 답  | 2,659 | 734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 김*환     |                      |           |           |    |
| 11 | 변경 | "   | 54-18  | 답  | 740   | 740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12 | 당초 | "   | 57     | 답  | 2,303 | 624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       | 김*환     |                      |           |           |    |
| 12 | 변경 | "   | 57-5   | 답  | 615   | 61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13 | 당초 | "   | 520-4  | 구  | 1,545 | 1,090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13 | 변경 | "   | 520-16 | 구  | 1,246 | 1,246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14 | 당초 | "   | 57-1   | 답  | 1,812 | 448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 고*희     |                      |           |           |    |
| 14 | 변경 | "   | 57-6   | 답  | 442   | 442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      | 고*희     |                      |           |           |    |
| 15 | 당초 | "   | 57-2   | 전  | 2,932 | 715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 이*복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주*희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이*봉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이*영     |                      |           |           |    |
| 15 | 변경 | "   | 57-7   | 전  | 714   | 714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 이*복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주*희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이*봉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      | 이*영     |                      |           |           |    |
| 16 | 당초 | "   | 57-3   | 답  | 1,241 | 430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장*심     |                      |           |           |    |
| 16 | 변경 | "   | 57-8   | 전  | 433   | 433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장*심     |                      |           |           |    |
| 17 | 당초 | "   | 57-4   | 답  | 1,653 | 780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이*용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 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17 | 변경 | "   | 57-9   | 답  | 773   | 773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이*용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 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18 | 당초 | 불로동 | 520-5  | 구  | 3,766 | 142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18 | 변경 | "   | 520-17 | 구  | 76    | 76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19 |    |     | 520-18 | 구  | 61    | 61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20 |    |     | 520-19 | 구  | 43    | 43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21 | 당초 | "   | 48-6   | 과  | 2,819 | 952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 박*수     |          |    |           |    |
| 21 | 변경 | "   | 48-15  | 과  | 935   | 935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22 | 당초 | "   | 48-3   | 과  | 2,645 | 879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       | 박*락     |          |    |           |    |
| 22 | 변경 | "   | 48-12  | 과  | 878   | 878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23 | 당초 | "   | 48-2   | 대  | 658   | 559  | 인천시 서구 마전동 ****         | 이*호     |          |    |           |    |
| 23 | 변경 | "   | 48-10  | 대  | 557   | 557  | 인천시 서구 마전동 ****         | 이*호     |          |    |           |    |
| 24 | 당초 | "   | 48-1   | 창  | 658   | 570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 황*진     |          |    |           |    |
|    |    |     |        |    |       |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 허*숙     |          |    |           |    |
| 24 | 변경 | "   | 48-9   | 창  | 568   | 568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 황*진     |          |    |           |    |
|    |    |     |        |    |       |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 허*숙     |          |    |           |    |
| 25 | 당초 | "   | 413-2  | 도  | 33    | 23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 김*식     |          |    |           |    |
| 25 | 변경 | "   | 413-2  | 도  | 33    | 3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26 | 당초 | "   | 736-14 | 도  | 64    | 45   | 국토교통부                   | 국       |          |    |           |    |
| 26 | 변경 | "   | 736-14 | 도  | 64    | 64   | 국토교통부                   | 국       |          |    |           |    |
| 27 | 당초 | "   | 414-3  | 도  | 144   | 140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        | 김*식     |          |    |           |    |
| 27 | 변경 | "   | 414-3  | 도  | 144   | 144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28 | 당초 | "   | 414-5  | 도  | 99    | 89   |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        | 김*중     |          |    |           |    |
| 28 | 변경 | "   | 414-9  | 도  | 83    | 83   |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 ****        | 김*중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29               | 당초  | 불로동 | 61    | 답  | 3,616 | 1,174 |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     | 김*호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 고촌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 김*호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계산지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서구 마전동 ****      | 김*호    |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 이*호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중구 향동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 김*선    |                         |           |           |    |
|                  |     |     |       |    |       |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 검단로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 | 장*자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 김*호    |                         |           |           |    |
|                  |     |     |       |    |       |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일신로 ****     | 김*례    |                         |           |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     | 김*의    |                         |           |           |    |
|                  |     |     |       |    |       |       | 경기도 부천시 삼작로 ****     | 김*윤    |                         |           |           |    |
|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 **** | 김*금 |     |       |    |       |       |                      |        |                         |           |           |    |
| 29               | 변경  | -   | 61-11 | 답  | 1,172 | 1,172 |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     | 김*호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 고촌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서구 검단로 ****      | 김*호    |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 이*호       | 근저당권      |    |
|                  |     |     |       |    |       |       |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남구 주안동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중구 향동 ****       | 김*호    |                         |           |           |    |
|                  |     |     |       |    |       |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 검단로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 김*호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 인천도서관사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30 | 당초 | 불로동 | 61-1   | 답  | 2,158 | 695  | 인천시 계양구<br>계산로 **** | 김*국 |                         |              |           |    |
| 30 | 변경 | "   | 61-13  | 답  | 693   | 693  | 인천시 계양구<br>계산로 **** | 김*국 |                         |              |           |    |
| 31 | 당초 | "   | 61-2   | 답  | 1,538 | 486  | 인천시 서구<br>불로동 ****  | 문*중 |                         |              |           |    |
| 31 | 변경 | "   | 61-15  | 답  | 483   | 483  | 인천시 서구<br>불로동 ****  | 문*중 |                         |              |           |    |
| 32 | 당초 | "   | 61-7   | 답  | 1,141 | 345  | 인천시 서구<br>불로동 ****  | 문*중 |                         |              |           |    |
| 32 | 변경 | "   | 61-19  | 답  | 347   | 347  | 인천시 서구<br>불로동 ****  | 문*중 |                         |              |           |    |
| 33 | 당초 | "   | 61-4   | 대  | 658   | 523  | 인천시 서구<br>불로동 ****  | 문*중 | 인천시 서구 검단로<br>497 (마전동) | 검단농업<br>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33 | 변경 | "   | 61-16  | 대  | 519   | 519  | 인천시 서구<br>불로동 ****  | 문*중 | 인천시 서구 검단로<br>497 (마전동) | 검단농업<br>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34 | 당초 | "   | 409    | 전  | 1,311 | 440  | 서울시 금천구<br>독산로 **** | 김*숙 |                         |              |           |    |
| 34 | 변경 | "   | 409-11 | 전  | 430   | 430  | 서울시 금천구<br>독산로 **** | 김*숙 |                         |              |           |    |
| 35 | 당초 | "   | 570-12 | 구  | 1,106 | 382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35 | 변경 | "   | 570-32 | 구  | 248   | 248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36 |    |     | 570-33 | 구  | 4     | 4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37 | 당초 | "   | 409-1  | 전  | 2,029 | 741  | 서울시 금천구<br>독산로 **** | 김*숙 |                         |              |           |    |
| 37 | 변경 | "   | 409-13 | 전  | 728   | 728  | 서울시 금천구<br>독산로 **** | 김*숙 |                         |              |           |    |
| 38 |    |     | 409-14 | 전  | 1     | 1    | 서울시 금천구<br>독산로 **** | 김*숙 |                         |              |           |    |
| 39 | 당초 | "   | 570-11 | 구  | 167   | 1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39 | 변경 | "   | 570-29 | 구  | 1     | 1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40 | 당초 | "   | 409-4  | 도  | 1,342 | 529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0 | 변경 | "   | 409-17 | 도  | 560   | 560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1 | 당초 | "   | 520-8  | 도  | 130   | 74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41 | 변경 | "   | 520-20 | 도  | 71    | 71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42 | 당초 | 불로동 | 52-5   | 답  | 2,466 | 95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2 | 변경 | "   | 52-17  | 답  | 93    | 93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3 | 당초 | "   | 520-9  | 구  | 272   | 99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43 | 변경 | "   | 520-22 | 구  | 38    | 38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44 |    |     | 520-23 | 구  | 62    | 62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45 | 당초 | "   | 52-3   | 전  | 497   | 62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5 | 변경 | "   | 52-16  | 전  | 59    | 59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6 | 당초 | "   | 52-6   | 답  | 2,016 | 131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6 | 변경 | "   | 52-18  | 답  | 128   | 128  | 인천광역시                      | 공          |                           |              |           |    |
| 47 | 당초 | "   | 52-2   | 답  | 1,779 | 203  | 인천시 계양구<br>서운동 ****        | 김*영        |                           |              |           |    |
| 47 | 변경 | "   | 52-14  | 답  | 143   | 143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48 |    |     | 52-15  | 답  | 59    | 59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49 | 당초 | "   | 52-1   | 답  | 3,037 | 401  | 전남 영광군<br>홍농읍 ****         | 황*미        |                           |              |           |    |
| 49 | 변경 | "   | 52-11  | 답  | 175   | 175  | 전남 영광군<br>홍농읍 ****         | 황*미        |                           |              |           |    |
| 50 |    |     | 52-12  | 답  | 288   | 288  | 전남 영광군<br>홍농읍 ****         | 황*미        |                           |              |           |    |
| 51 | 당초 | "   | 52     | 답  | 975   | 153  | 인천시 계양구<br>계산새로 ****       | 최*호        | 인천광역시 계양구<br>작전동 206      | 계양<br>새마을금고  | 근저당권      |    |
| 51 | 변경 | "   | 52-8   | 답  | 151   | 151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52 | 당초 | "   | 51-4   | 답  | 1,967 | 320  | 인천시 계양구<br>주부도로 ****       | 이*례        | 인천시 부평구 길주<br>로 597 (갈산동) | 부평농업<br>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52 | 변경 | "   | 51-10  | 답  | 321   | 321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53 | 당초 | "   | 51-5   | 답  | 640   | 113  | 서울시 은평구<br>갈현로 ****        | 박*배        | 인천시 서구 검단로<br>497 (마전동)   | 검단농업<br>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53 | 변경 | "   | 51-11  | 답  | 113   | 113  | 서울시 은평구<br>갈현로 ****        | 박*배        | 인천시 서구 검단로<br>497 (마전동)   | 검단농업<br>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54 | 당초 | 불로동 | 51-3   | 답  | 1,328 | 241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 박*배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54 | 변경 | "   | 51-9   | 답  | 243   | 243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 박*배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55 | 당초 | "   | 51-2   | 답  | 2,916 | 580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 박*배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55 | 변경 | "   | 51-8   | 답  | 582   | 582   | 서울시 은평구 갈현로 **** | 박*배 | 인천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56 | 당초 | "   | 51-1   | 답  | 1,014 | 218   |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 **** | 김*술 |                      |           |           |    |
| 56 | 변경 | "   | 51-7   | 답  | 219   | 219   |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 **** | 김*술 |                      |           |           |    |
| 57 | 당초 | "   | 51     | 답  | 4,003 | 928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 | 조*인 |                      |           |           |    |
| 57 | 변경 | "   | 51-6   | 답  | 925   | 925   | 인천시 부평구 경인로 **** | 조*인 |                      |           |           |    |
| 58 | 당초 | "   | 520-3  | 도  | 1,830 | 1,770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58 | 변경 | "   | 520-15 | 도  | 1,770 | 1,770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59 | 당초 | "   | 50-3   | 답  | 4,007 | 1,071 |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 **** | 윤*  |                      |           |           |    |
| 59 | 변경 | "   | 50-8   | 답  | 1,061 | 1,061 | 인천시 계양구 장계로 **** | 윤*  |                      |           |           |    |
| 60 | 당초 | "   | 50-2   | 답  | 3,960 | 1,144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 | 이*천 |                      |           |           |    |
| 60 | 변경 | "   | 50-7   | 답  | 1,147 | 1,147 | 인천시 남동구 백범로 **** | 이*천 |                      |           |           |    |
| 61 | 당초 | "   | 50-1   | 답  | 5,567 | 1,733 | 인천시 서구 불로동 ****  | 김*영 |                      |           |           |    |
| 61 | 변경 | "   | 50-6   | 답  | 1,737 | 1,737 | 인천시 서구 불로동 ****  | 김*영 |                      |           |           |    |
| 62 | 당초 | "   | 50     | 과  | 3,307 | 1,116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 | 김*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79   | 신김포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62 | 변경 | "   | 50-5   | 과  | 1,120 | 1,120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 | 김*환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서암로 79   | 신김포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63 | 당초 | "   | 50-4   | 과  | 3,307 | 1,137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 김*갑 |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301-2    | 김포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지상권 |    |
| 63 | 변경 | "   | 50-9   | 과  | 1,141 | 1,141 |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 | 김*갑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64 | 당초 | 불로동 | 48-7   | 전  | 1,495 | 162   | 인천시 서구<br>마전동 ****         | 이*호        |          |    |           |    |
| 64 | 변경 | "   | 48-17  | 전  | 163   | 163   | 인천시 서구<br>마전동 ****         | 이*호        |          |    |           |    |
| 65 | 당초 | "   | 48-8   | 답  | 2,602 | 730   | 인천시 강화군<br>길상면 ****        | 황*진        |          |    |           |    |
|    |    |     |        |    |       |       | 인천시 강화군<br>길상면 ****        | 허*숙        |          |    |           |    |
| 65 | 변경 | "   | 48-19  | 답  | 727   | 727   | 인천시 강화군<br>길상면 ****        | 황*진        |          |    |           |    |
|    |    |     |        |    |       |       | 인천시 강화군<br>길상면 ****        | 허*숙        |          |    |           |    |
| 66 | 당초 | "   | 48-5   | 전  | 3,915 | 2,333 | 경기도 김포시<br>검단면 ****        | 김*중        |          |    |           |    |
| 66 | 변경 | "   | 48-14  | 전  | 2,286 | 2,286 | 경기도 김포시<br>검단면 ****        | 김*중        |          |    |           |    |
| 67 | -  | "   | 48     | 대  | 658   | 21    | 경기도 김포시<br>검단면 ****        | 김*중        |          |    |           |    |
| 68 | -  | "   | 415-5  | 답  | 192   | 192   | 기획재정부                      | 국          |          |    |           |    |
| 69 | 당초 | "   | 415-4  | 도  | 132   | 119   | 경기도 고양시<br>일산서구 ****       | 김*식        |          |    |           |    |
| 69 | 변경 | "   | 415-24 | 도  | 84    | 84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70 | 당초 | "   | 736-6  | 도  | 149   | 8     | 국토교통부                      | 국          |          |    |           |    |
| 70 | 변경 | "   | 736-28 | 도  | 20    | 20    | 국토교통부                      | 국          |          |    |           |    |
| 71 | 당초 | "   | 415-6  | 도  | 579   | 510   | 인천광역시 서구                   | 공          |          |    |           |    |
| 71 | 변경 | "   | 415-25 | 도  | 609   | 609   | 인천광역시 서구                   | 공          |          |    |           |    |
| 72 | -  | "   | 415-22 | 도  | 192   | 192   | 경기도 김포시<br>검단면 ****        | 이*중        |          |    |           |    |
| 73 | 당초 | "   | 415-20 | 도  | 123   | 32    | 인천광역시                      | 공          |          |    |           |    |
| 73 | 변경 | "   | 415-26 | 도  | 27    | 27    | 인천광역시                      | 공          |          |    |           |    |
| 74 | 당초 | "   | 59     | 답  | 4,110 | 2,118 | 인천시 서구<br>가현로****          | 이*자        |          |    |           |    |
| 74 | 변경 | "   | 59-4   | 답  | 1     | 1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75 |    |     | 59-5   | 답  | 2,120 | 2,120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및내용 |    |
| 76               | 당초  | 불로동 | 59-1 | 답  | 1,533 | 767  | 인천시 연수구 만우금로 *****      | 김*호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 고촌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서구 마전동 ****         | 김*호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가 75 (계산지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 김*호     |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 이*호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        | 김*순     |                         |           |           |    |
|                  |     |     |      |    |       |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 검단로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 불로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 류*남     |                         |           |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 장*자 |     |      |    |       |      |                         |         |                         |           |           |    |
| 76               | 변경  | “   | 59-7 | 답  | 771   | 771  | 인천시 연수구 만우금로 *****      | 김*호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569-6   | 고촌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갈산동 ****        | 김*호     |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      | 이*호       | 근저당권      |    |
|                  |     |     |      |    |       |      |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 검단로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 불로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 유현로 ****        | 류*남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m <sup>2</sup> )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77                   | 당초  | 불로동 | 59-2 | 답  | 2,346               | 1,134 | 인천 연수구<br>만우금로 ****        | 김*호        |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br>신곡리 569-6    | 고촌농업<br>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br>갈산동 ****        | 김*호        | 서울시 중구 충정로 1<br>가 75 (계산지점) | 농업협동<br>조합중앙회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서구 마전동<br>****         | 김*호        | 서울시 서대문구<br>모래내로 ****       | 이*호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남동구<br>간석동 ****        | 김*선        |                             |               |             |    |
|                      |     |     |      |    |                     |       | 서울시 강서구<br>염창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br>고촌읍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br>검단로 ****         | 김*호        |                             |               |             |    |
|                      |     |     |      |    |                     |       | 서울시 양천구<br>목동 ****         | 김*호        |                             |               |             |    |
|                      |     |     |      |    |                     |       | 김포군 검단면<br>불로리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br>구****        | 장*자        |                             |               |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일신<br>로****        | 김*례        |                             |               |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 부평<br>동****        | 김*의        |                             |               |             |    |
|                      |     |     |      |    |                     |       | 경기도 부천시 삼작<br>로****        | 김*윤        |                             |               |             |    |
| 서울시 강서구 방화<br>동 **** | 김*금 |     |      |    |                     |       |                            |            |                             |               |             |    |
| 77                   | 변경  | “   | 59-9 | 답  | 1,126               | 1,126 | 인천시 연수구<br>만우금로 *****      | 김*호        | 경기도 김포시 고촌<br>읍 신곡리 569-6   | 고촌농업<br>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     |     |      |    |                     |       | 인천시 부평구<br>갈산동 ****        | 김*호        | 서울시 서대문구<br>모래내로 ****       | 이*호           | 근저당권        |    |
|                      |     |     |      |    |                     |       | 서울시 강서구<br>염창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br>고촌읍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br>검단로 ****         | 김*호        |                             |               |             |    |
|                      |     |     |      |    |                     |       | 인천시 서구<br>불로동 ****         | 김*호        |                             |               |             |    |
|                      |     |     |      |    |                     |       | 경기도 김포시<br>유현로 ****        | 류*남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남동구<br>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br>도시공사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 소유권외의 권리               |          |             | 비고 |
|----|----|-----|--------|----|-------|------|-------------------------|---------|------------------------|----------|-------------|----|
|    |    |     |        |    |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
| 78 | 당초 | 블로동 | 570-2  | 구  | 419   | 156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78 | 변경 | “   | 570-28 | 구  | 155   | 155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79 | 당초 | “   | 61-8   | 답  | 1,694 | 808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문*식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79 | 변경 | “   | 61-21  | 전  | 811   | 811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문*식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80 | 당초 | “   | 61-5   | 답  | 1,116 | 391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문*중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80 | 변경 | “   | 61-17  | 답  | 393   | 393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 문*중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97 (마전동) | 검단농업협동조합 | 근저당권        |    |
| 81 | 당초 | “   | 568-13 | 구  | 390   | 26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81 | 변경 | “   | 568-17 | 구  | 26    | 26   | 농림축산식품부                 | 국       |                        |          |             |    |
| 82 | 당초 | “   | 486-13 | 도  | 2,285 | 4    | 인천광역시                   | 공       |                        |          |             |    |
| 82 | 변경 | “   | 486-17 | 도  | 4     | 4    | 인천광역시                   | 공       |                        |          |             |    |
| 83 | 당초 | “   | 415-19 | 도  | 69    | 64   |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 이*중     |                        |          |             |    |
| 83 | 변경 | “   | 419-19 | 도  | 69    | 69   |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 이*중     |                        |          |             |    |
| 84 | 당초 | “   | 414-2  | 도  | 16    | 15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       | 김*식     |                        |          |             |    |
| 84 | 변경 | “   | 414-2  | 도  | 16    | 16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인천 도시공사 |                        |          |             |    |
| 85 | 당초 | “   | 414-1  | 전  | 3     | 1    |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로 ****       | 김*구     |                        |          |             |    |
| 85 | 변경 | “   | 414-1  | 전  | 3     | 3    |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로 ****       | 김*구     |                        |          |             |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인천 대곡동~블로지구 연결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                   | 관계인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1  | 기정 | 블로동 | 54-4  | 비닐하우스 (3동) | 철파이프/루핑 | 536㎡ |          | 문*갑 |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 |     |    |    |
|    |    |     |       | 물탱크        |         | 1식   |          |     |                   |     |    |    |
|    |    |     |       | 포도나무       |         | 220주 |          |     |                   |     |    |    |
| 1  | 변경 | "   | 54-15 | 비닐하우스 (3동) | 철파이프/루핑 | 536㎡ |          | 문*갑 | 인천광역시 서구 블로동 **** |     |    |    |
|    |    |     |       | 물탱크        |         | 1식   |          |     |                   |     |    |    |
|    |    |     |       | 포도나무       |         | 220주 |          |     |                   |     |    |    |
| 2  | 기정 | "   | 57-2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비닐 | 339㎡ |          | 이*복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     |    |    |
|    |    |     |       | 유실수        |         | 12주  |          |     |                   |     |    |    |
| 2  | 변경 | "   | 57-7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비닐 | 339㎡ |          | 이*복 |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     |    |    |
|    |    |     |       | 유실수        |         | 12주  |          |     |                   |     |    |    |
| 3  | 기정 | "   | 48-6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루핑 | 174㎡ |          | 박*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     |    |    |
|    |    |     |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비닐 | 35㎡  |          |     |                   |     |    |    |
|    |    |     |       | 간이화장실      |         | 1식   |          |     |                   |     |    |    |
|    |    |     |       | 포도나무       |         | 325주 |          |     |                   |     |    |    |
| 3  | 변경 | "   | 48-15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루핑 | 174㎡ |          | 박*수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  |     |    |    |
|    |    |     |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비닐 | 35㎡  |          |     |                   |     |    |    |
|    |    |     |       | 간이화장실      |         | 1식   |          |     |                   |     |    |    |
|    |    |     |       | 포도나무       |         | 325주 |          |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                   | 관계인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4  | 기정 | 블로동 | 48-2  | 가옥     | 조적조/기와  | 164㎡ |          | 이*봉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    |    |
|    |    |     |       | 컨테이너   |         | 19㎡  |          |     |                   |     |    |    |
|    |    |     |       | 울타리    |         | 105m |          |     |                   |     |    |    |
|    |    |     |       | 관정     |         | 1식   |          |     |                   |     |    |    |
| 4  | 변경 | "   | 48-10 | 가옥     | 조적조/기와  | 164㎡ |          | 이*봉 |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     |    |    |
|    |    |     |       | 컨테이너   |         | 19㎡  |          |     |                   |     |    |    |
|    |    |     |       | 울타리    |         | 105m |          |     |                   |     |    |    |
|    |    |     |       | 관정     |         | 1식   |          |     |                   |     |    |    |
| 5  | 기정 | "   | 48-1  | 창고     | 철골/합석   | 102㎡ |          | 황*진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     |    |    |
|    |    |     |       | 웬스     |         | 104m |          |     |                   |     |    |    |
| 5  | 변경 | "   | 48-9  | 창고     | 철골/합석   | 102㎡ |          | 황*진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     |    |    |
|    |    |     |       | 웬스     |         | 104m |          |     |                   |     |    |    |
| 6  | 기정 | "   | 48-8  | 관상수    |         | 75주  |          | 황*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    |
| 6  | 변경 | "   | 48-19 | 관상수    |         | 75주  |          | 황*진 | 인천광역시 강화군 ****    |     |    |    |
| 7  | 기정 | "   | 48-5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루핑 | 113㎡ |          | 김*중 |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     |    |    |
|    |    |     |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비닐 | 106㎡ |          |     |                   |     |    |    |
|    |    |     |       | 컨테이너   |         | 19㎡  |          |     |                   |     |    |    |
|    |    |     |       | 가건물    | 철파이프/천막 | 121㎡ |          |     |                   |     |    |    |
| 7  | 변경 | "   | 48-14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루핑 | 113㎡ |          | 김*중 | 경기도 김포시 검단면 ****  |     |    |    |
|    |    |     |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비닐 | 106㎡ |          |     |                   |     |    |    |
|    |    |     |       | 컨테이너   |         | 19㎡  |          |     |                   |     |    |    |
|    |    |     |       | 가건물    | 철파이프/천막 | 121㎡ |          |     |                   |     |    |    |

| 연번 | 구분 |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실제 이용 상황 | 소유자 |                                | 관계인 |    | 비고 |
|----|----|-----|--------|---------------|---------|------|----------|-----|--------------------------------|-----|----|----|
|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8  | -  | 블로동 | 48     | 관상수           |         | 17주  |          | 김*중 | 경기도<br>김포시<br>검단면<br>****      |     |    |    |
|    |    |     |        | 웬스            |         | 25m  |          |     |                                |     |    |    |
| 9  | 기정 | "   | 61-8   | 비닐하우스<br>(2동) | 철파이프/비닐 | 331㎡ |          | 문*식 | 인천<br>광역시<br>서구<br>블로동<br>**** |     |    |    |
|    |    |     |        | 관정            |         | 1식   |          |     |                                |     |    |    |
| 9  | 변경 | "   | 61-21  | 비닐하우스<br>(2동) | 철파이프/비닐 | 331㎡ |          | 문*식 | 인천<br>광역시<br>서구<br>블로동<br>**** |     |    |    |
|    |    |     |        | 관정            |         | 1식   |          |     |                                |     |    |    |
| 10 | 기정 | "   | 61-4   | 가옥(2F)        | 조적조/형글  | 338㎡ |          | 문*중 | 인천<br>광역시<br>서구<br>검단로<br>**** |     |    |    |
|    |    |     |        | 울타리           |         | 606m |          |     |                                |     |    |    |
|    |    |     |        | 관상수           |         | 30주  |          |     |                                |     |    |    |
| 10 | 변경 | "   | 61-16  | 가옥(2F)        | 조적조/형글  | 338㎡ |          | 문*중 | 인천<br>광역시<br>서구<br>검단로<br>**** |     |    |    |
|    |    |     |        | 울타리           |         | 606m |          |     |                                |     |    |    |
|    |    |     |        | 관상수           |         | 30주  |          |     |                                |     |    |    |
| 11 | 기정 | "   | 409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    | 56㎡  |          | 김*숙 | 서울<br>금천구<br>독산동<br>****       |     |    |    |
| 11 | 변경 | "   | 409-11 | 비닐하우스         | 철파이프    | 56㎡  |          | 김*숙 | 서울<br>금천구<br>독산동<br>****       |     |    |    |
| 12 | 기정 | "   | 409-1  | 비닐하우스<br>(2동) | 철파이프/비닐 | 367㎡ |          | 김*숙 | 서울<br>금천구<br>독산동<br>****       |     |    |    |
| 12 | 변경 | "   | 409-13 | 비닐하우스<br>(2동) | 철파이프/비닐 | 367㎡ |          | 김*숙 | 서울<br>금천구<br>독산동<br>****       |     |    |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68호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 및 제1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 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 9.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 주요 변경 내용

- 토지이용계획 변경  
산업단지내 근로자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유치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상 지원시설내 주유소용지를 공공문화·복지시설로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① 가구 및 획지 : 주유소용지 1개를 공공문화복지시설로 변경(신설)
  - ② 건축물 허용용도 : 공공문화·복지시설에 대해 복합문화센터 건립계획(안)에 적정한 허용용도를 부여

### 1. 사업의 명칭 (변경 없음)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 2. 사업시행자의 성명· 주소 (변경 없음)

- 명칭: 인천도시공사 사장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변경)

#### 가. 사업의 목적 (변경 없음)

- 검단신도시 및 인천 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 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 나. 사업개요 (변경)

- 근거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사업비: 14,038억원
-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구 분         | 기정                   |        | 변경                   |        | 비 고  |
|-------------|----------------------|--------|----------------------|--------|------|
|             | 면 적(m <sup>2</sup> ) | 구성비(%) | 면 적(m <sup>2</sup> ) | 구성비(%) |      |
| 합 계         | 2,250,719.2          | 100.0  | 2,250,719.2          | 100.0  |      |
| 산 업 시 설 용 지 | 1,381,455.0          | 61.3   | 1,381,455.0          | 61.3   |      |
| 일반 공장 용 지   | 1,328,186.8          | 59.0   | 1,328,186.8          | 59.0   |      |
| 임대 공장 용 지   | 17,205.6             | 0.7    | 17,205.6             | 0.7    |      |
| 지식산업센터용지    | 26,441.9             | 1.2    | 26,441.9             | 1.2    |      |
| 재활용 시설 용 지  | 9,620.7              | 0.4    | 9,620.7              | 0.4    |      |
| 지 원 시 설 용 지 | 57,033.4             | 2.5    | 57,033.4             | 2.5    |      |
| 지 원 시 설 용 지 | 52,573.4             | 2.3    | 52,573.4             | 2.3    |      |
| 주 유 소 용 지   | 4,460.0              | 0.2    | 2,441.5              | 0.1    |      |
| 공공문화·복지시설   | -                    | -      | 2,018.5              | 0.1    | 신설   |
| 주 거 용 지     | 5,693.6              | 0.3    | 5,693.6              | 0.3    | 22세대 |
| 공 공 시 설 용 지 | 806,537.2            | 35.9   | 806,537.2            | 35.9   |      |
| 공 원 · 녹 지   | 226,270.8            | 10.1   | 226,270.8            | 10.1   |      |
| 공 원         | 66,852.2             | 3.0    | 66,852.2             | 3.0    | 3개소  |
| 녹 지         | 138,754.4            | 6.2    | 138,754.4            | 6.2    | 11개소 |
| 저 류 시 설     | 20,664.2             | 0.9    | 20,664.2             | 0.9    | 4개소  |
| 기 타 시 설 용 지 | 580,266.4            | 25.8   | 580,266.4            | 25.8   |      |
| 폐기물처리시설     | 38,680.9             | 1.7    | 38,680.9             | 1.7    | 1개소  |
| 폐수종말처리시설    | 40,088.4             | 1.8    | 40,088.4             | 1.8    | 1개소  |
| 빗 물 펌 프 장   | 4,139.6              | 0.2    | 4,139.6              | 0.2    | 1개소  |
| 변 전 소       | 3,993.1              | 0.2    | 3,993.1              | 0.2    | 1개소  |
| 주 차 장       | 23,587.5             | 1.0    | 23,587.5             | 1.0    | 7개소  |
| 공 영 차 고 지   | 9,998.7              | 0.4    | 9,998.7              | 0.4    | 1개소  |
| 도 로         | 459,778.2            | 20.5   | 459,778.2            | 20.5   |      |

주) 1. 공원은 공원내 시설로 중복 지정된 저류시설 1개소(A = 20,613.0㎡) 포함면적임

## ○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 주요유치업종

- 유치업종 배치계획

| 중분류            | 업종명  | 면적<br>(㎡)   | 구성비<br>(%) | 비고 |
|----------------|--|-------------|------------|----|
| -              | 합계   | 1,371,834.3 | 100.0%     |    |
| 16<br>3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 제조업   | 132,655.5   | 9.7%       |    |
| 22             | 고무제품 및<br>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68,047.9    | 5.0%       |    |
| 24             | 1차 금속 제조업  | 48,312.4    | 3.5%       |    |
| 25<br>29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sup>1)</sup>                              | 23,146.9    | 1.7%       |    |
| 26<br>27<br>28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br>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br>시계제조업,<br>전기장비 제조업 | 130,891.8   | 9.5%       |    |
| 29<br>25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br>금속가공제품 제조업 <sup>2)</sup>                              | 599,320.3   | 43.7%      |    |
| 10             | 식료품 제조업 <sup>3)</sup>  | 29,476.3    | 2.1%       |    |
| -              | 임대공장용지 <sup>4)</sup>   | 17,205.6    | 1.3%       |    |
| -              | 복합업종 <sup>5)</sup>   | 296,335.7   | 21.6%      |    |
| -              | 지식산업센터 <sup>6)</sup>   | 26,441.9    | 1.9%       |    |

주)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 청정표면처리센터 (23,146.9㎡) 포함

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중 (25922)도금업 제외

3. 식료품제조업 중 (1012)육류가공·저장처리업, (1021)수산식품 가공·저장처리업, (1071)떡·빵·과자류 제조업, (1073)면류, 마카로니·유사식품제조업, (1079)기타 식료품제조업' 에 한함

4. 제시된 9개 업종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5.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3991)아스콘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제외),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6. 제시된 9개 업종과 (10)식품 제조업,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 4. 사업시행지역 위치 및 면적 (변경 없음)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 면 적: 2,250,719.2m<sup>2</sup>

## 5. 사업시행기간

- 시행방법: 수용방식
- 시행기간: 2021년 7~9월

##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 (변경)

##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 1)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 분         | 기정          |            | 증감<br>면 적<br>(㎡) | 변경          |            | 비고 |
|-------------|-------------|------------|------------------|-------------|------------|----|
|             | 면 적<br>(㎡)  | 구성비<br>(%) |                  | 면 적<br>(㎡)  | 구성비<br>(%) |    |
| 총 계         | 2,250,719.2 | 100.0      | -                | 2,250,719.2 | 100.0      |    |
| 주 거 지 역     | 20,991.3    | 0.9        | -                | 20,991.3    | 0.9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991.3    | 0.9        | -                | 20,991.3    | 0.9        |    |
| 공 업 지 역     | 2,229,727.9 | 99.1       | -                | 2,229,727.9 | 99.1       |    |
| 일 반 공 업 지 역 | 2,126,418.1 | 94.5       | -                | 2,126,418.1 | 94.5       |    |
| 준 공 업 지 역   | 103,309.8   | 4.6        | -                | 103,309.8   | 4.6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 없음)

| 도면포시<br>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적 (㎡)      | 비고 |
|-------------|----------------------------|-------------------------------|-------------|----|
| ㉔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br>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br>410 - 243일원 | 2,250,719.2 |    |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없음)

가) 도로(변경 없음)

① 도로시설 총괄표

(단위 : 개, m, m<sup>2</sup>)

| 구분               |    | 폭원<br>(m) | 노선수<br>(개소) | 연장<br>(m) | 면적 (m <sup>2</sup> ) | 비고        |  |
|------------------|----|-----------|-------------|-----------|----------------------|-----------|--|
| 합계               |    |           | 65          | 22,581    | 459,778.2            |           |  |
| 일<br>반<br>도<br>로 | 광로 | 소계        | -           | 1,590     | 63,600.0             |           |  |
|                  |    | 1류        | -           | -         | -                    | -         |  |
|                  |    | 2류        | -           | -         | -                    | -         |  |
|                  |    | 3류        | 40          | 1         | 1,590                | 63,600.0  |  |
|                  | 대로 | 소계        | -           | 6         | 5,145                | 128,625.0 |  |
|                  |    | 1류        | -           | -         | -                    | -         |  |
|                  |    | 2류        | -           | -         | -                    | -         |  |
|                  |    | 3류        | 25          | 6         | 5,145                | 128,625.0 |  |
|                  | 중로 | 소계        | -           | 48        | 14,848               | 241,309.0 |  |
|                  |    | 1류        | 20~22       | 9         | 3,448                | 74,772.0  |  |
|                  |    | 2류        | 15          | 30        | 9,637                | 144,855.0 |  |
|                  |    | 3류        | 12          | 9         | 1,763                | 21,682.0  |  |
|                  | 소로 | 소계        | -           | 10        | 998                  | 8,531.0   |  |
|                  |    | 1류        | 10          | 4         | 507                  | 5,051.0   |  |
|                  |    | 2류        | 8           | 1         | 201                  | 1,608.0   |  |
|                  |    | 3류        | 6           | 1         | 14                   | 84.0      |  |
| 특수도로             | 3류 | 6~8       | 4           | 276       | 1,788.0              | 보행자도로     |  |
| 기타               |    |           |             |           | 17,713.2             | 가감속차로 등   |  |

## ② 도로 결정 조서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br>경과지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기정 | 광로 | 3  | 23  | 40 | 주간선도로  | 10,610<br>(1,590) | 동측행정구역계              | 대로 2-61               | 일반도로 |           | 인고-118<br>(98.6.12)  |    |
| 기정 | 대로 | 3  | 58  | 25 | 주간선도로  | 8,427<br>(969)    | 동측행정구역계              | 지구계<br>(오류동 1643-10)  | 일반도로 |           | 인고-122<br>(06.7.24)  |    |
| 기정 | 대로 | 3  | 114 | 25 | 보조간선도로 | 2,762<br>(542)    | 지구계<br>(오류동 1610-10) | 서측행정구역계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대로 | 3  | 115 | 25 | 보조간선도로 | 1,320             | 광로 3-23              | 대로 3-114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대로 | 3  | 116 | 25 | 보조간선도로 | 498               | 광로3-23               | 대로3-58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대로 | 3  | 117 | 25 | 보조간선도로 | 1,319             | 광로 3-23              | 대로 3-114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대로 | 3  | 118 | 25 | 보조간선도로 | 497               | 광로 3-23              | 대로 3-58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140 | 20 | 집산도로   | 675<br>(298)      | 광로 3-23              | 대로 3-59<br>(오류동 1695) | 일반도로 |           | 인고-182<br>(00.10.14) |    |
| 기정 | 중로 | 1  | 362 | 22 | 집산도로   | 369               | 대로 3-117             | 대로 3-11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363 | 22 | 집산도로   | 1,477             | 대로 3-117             | 지구계<br>(대로 3-64)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364 | 20 | 집산도로   | 244               | 광로 3-23              | 중로 1-363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365 | 22 | 집산도로   | 371               | 대로 3-117             | 대로 3-11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366 | 22 | 집산도로   | 117               | 대로 3-115             | 지구계<br>(오류동 1623-9)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367 | 22 | 집산도로   | 117               | 대로 3-115             | 지구계<br>(오류동 1623-9)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368 | 22 | 집산도로   | 291               | 광로 3-23              | 중로 1-363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1  | 369 | 22 | 집산도로   | 164               | 중로 1-363             | 중로 2-65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55 | 15 | 집산도로   | 993               | 중로 1-363             | 지구계<br>(오류동1636-2)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br>경과지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기정 | 중로 | 2  | 656 | 15        | 집산도로 | 155 | 중로 1-363 | 중로 2-65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57 | 15        | 집산도로 | 292 | 중로 1-363 | 중로 1-368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58 | 15        | 집산도로 | 266 | 중로 1-363 | 중로 2-661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59 | 15        | 집산도로 | 376 | 중로 1-363 | 중로 2-661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1 | 15        | 집산도로 | 468 | 중로 1-368 | 중로 1-364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2 | 15~<br>21 | 집산도로 | 222 | 광로 3-23  | 중로 1-140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3 | 15        | 집산도로 | 490 | 대로 3-58  | 중로 1-140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4 | 15        | 집산도로 | 329 | 대로 3-118 | 중로 2-663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5 | 15        | 집산도로 | 397 | 대로 3-118 | 중로 2-663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6 | 15        | 집산도로 | 315 | 대로 3-117 | 중로 1-364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7 | 15        | 집산도로 | 243 | 대로 3-118 | 중로 2-73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8 | 15        | 집산도로 | 367 | 대로 3-118 | 대로 3-116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69 | 15        | 집산도로 | 369 | 대로 3-117 | 대로 3-11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70 | 15        | 집산도로 | 370 | 대로 3-117 | 대로 3-11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71 | 15        | 집산도로 | 284 | 대로 3-117 | 중로 2-672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72 | 15        | 집산도로 | 372 | 대로 3-117 | 대로 3-11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73 | 15        | 집산도로 | 373 | 대로 3-117 | 대로 3-11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74 | 15        | 집산도로 | 106 | 대로 3-58  | 유수지 <sup>㉔</sup><br>(오류동1644-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675 | 15        | 집산도로 | 452 | 중로 1-369 | 중로 2-65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2  | 735 | 15        | 집산도로 | 395 | 대로 3-58  | 중로 2-668                        | 일반도로 |           | 인고-35<br>(10.02.08)  |    |
| 기정 | 중로 | 2  | 736 | 15        | 집산도로 | 322 | 대로 3-58  | 대로 3-58                         | 일반도로 |           | 인고-35<br>(10.02.08)  |    |

|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기능   | 연장  | 기점               | 종점                  | 사용형태        | 주요<br>경과지 | 최초<br>결정일            | 비고 |
|----|----|----|-----|-------|------|-----|------------------|---------------------|-------------|-----------|----------------------|----|
| 기정 | 중로 | 2  | 737 | 15    | 집산도로 | 201 | 대로 3-58          | 중로 2-664            | 일반도로        |           | 인고-35<br>(10.02.08)  |    |
| 기정 | 중로 | 3  | 249 | 12    | 집산도로 | 383 | 중로 2-665         | 중로 2-665            | 일반도로        |           | 인고-35<br>(10.02.08)  |    |
| 기정 | 중로 | 3  | 250 | 12    | 집산도로 | 158 | 중로 1-363         | 중로 2-659            | 일반도로        |           | 인고-35<br>(10.02.08)  |    |
| 기정 | 중로 | 3  | 251 | 12    | 집산도로 | 158 | 중로 1-363         | 중로 2-659            | 일반도로        |           | 인고-35<br>(10.02.08)  |    |
| 기정 | 중로 | 3  | 392 | 12    | 국지도로 | 40  | 중로 2-662         | 중로 3-393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3  | 393 | 12    | 국지도로 | 376 | 중로 1-140         | 지구계<br>(오류동 1665-2)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3  | 394 | 12~16 | 국지도로 | 40  | 중로 1-140         | 지구계<br>(오류동 395-93)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중로 | 3  | 가   | 12    | 국지도로 | 118 | 대로 3-114         | 폐기물처리시설             | 일반도로        |           | 인고-33<br>(13.02.28)  |    |
| 기정 | 중로 | 3  | 나   | 12~15 | 국지도로 | 226 | 중로 2-666         | 중로 2-666            | 일반도로        |           | 인고-33<br>(13.02.28)  |    |
| 기정 | 중로 | 3  | 다   | 12    | 국지도로 | 264 | 중로 1-363         | 중로 2-656            | 일반도로        |           | 인고-33<br>(13.02.28)  |    |
| 기정 | 소로 | 1  | 1   | 10    | 국지도로 | 179 | 중로 2-663         | 소로 1-2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소로 | 1  | 2   | 10    | 국지도로 | 237 | 중로 3-394         | 소로 1-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1  | 3   | 10    | 국지도로 | 60  | 소로 1-2           | 소로 1-1              | 일반도로        |           |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201 | 소로 1-1           | 지구계<br>(오류동369-5)   | 일반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소로 | 1  | 가   | 10    | 국지도로 | 31  | 중로 1-140         | 중로 2-마              | 일반도로        |           | 인고-33<br>(13.02.28)  |    |
| 기정 | 소로 | 3  | 가   | 6     | 국지도로 | 14  | 지구계<br>(오류동1143) | 지구계<br>(오류동1143)    | 일반도로        |           | 인고-33<br>(13.02.28)  |    |
| 기정 | 소로 | 3  | 1   | 6     | 특수도로 | 29  | 중로 1-140         | 소로 1-2              | 보행자전<br>용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소로 | 3  | 2   | 6     | 특수도로 | 78  | 중로 1-363         | 중로 2-675            | 보행자전<br>용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소로 | 3  | 3   | 6     | 특수도로 | 80  | 중로 2-655         | 중로 2-675            | 보행자전<br>용도로 |           | 인고-366<br>(08.12.29) |    |
| 기정 | 소로 | 3  | 나   | 6~8   | 특수도로 | 89  | 광로 3-23          | 중로 2-666            | 보행자전<br>용도로 |           | 인고-33<br>(13.02.28)  |    |

※ ( )는 산업단지내 연장 및 기·종점

나)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합 계       |     |                | 23,587.5 |                      |        |
| 기정 | ㉑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40-1  | 3,765.3  | 인고-366<br>(08.12.29) | 준공업지역  |
| 기정 | ㉒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58-9  | 3,883.5  | 인고-366<br>(08.12.29) | 준공업지역  |
| 기정 | ㉓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39-12 | 1,650.2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㉔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39-12 | 1,650.2  | 서구고시-63<br>(17.6.5)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㉕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63-1  | 3,023.8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㉖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515-5  | 2,097.4  | 인고-366<br>(08.12.29) | 준공업지역  |
| 기정 | ㉗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44-9  | 2,694.2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㉘         | 주차장 | 서구 오류동 1630-9  | 4,822.9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다) 자동차정류장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 | 시설명        | 시설의<br>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㉑         | 자동차<br>정류장 | 공영<br>차고지 | 서구 오류동 1620-1 | 9,998.7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라) 녹지 결정 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 | 시설명      | 시설의<br>종류 | 위 치               | 면 적(㎡)                   | 최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합 계       |          |           | -                 | 193,532.4<br>(138,754.4) |                        |          |
| 기정 | ㉑         | ㉑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44-11    | 11,675.7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㉒         | ㉒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55-8     | 18,573.1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㉓         | ㉓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59-14 일원 | 5,634.6                  | 인고-366<br>(08.12.29)   | 제종일반주거지역 |
| 기정 | ㉔         | ㉔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64       | 4,393.9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㉕         | ㉕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36-3     | 2,858.6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㉖         | ㉖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66 일원    | 52,095.9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㉗         | ㉗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10-8 일원  | 16,959.2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㉘         | ㉘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63-9 일원  | 2,061.1                  | 인고-147<br>(11.06.20)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㉙         | ㉙호<br>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44-10 일원 | 4,738.5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㉚         | 당하1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63-7 일원  | 25,800.5<br>(7,132.5)    | 서구고시-22호<br>(05.04.12)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㉛         | 당하2녹지    | 완충녹지      | 서구 오류동 1639-13 일원 | 48,741.3<br>(12,631.3)   | 서구고시-22호<br>(05.04.12) | 일반공업지역   |

※ ( )는 산업단지내 위치 및 면적

마) 공원(변경 없음)

■ 총괄표 (산업단지 내)

| 구 분     | 행정구역(㎡) |          | 시가화구역(㎡) |          |
|---------|---------|----------|----------|----------|
|         | 기정      |          | 기정       |          |
|         | 개소      | 면적       | 개소       | 면적       |
| 합 계     | 3       | 66,852.2 | 3        | 66,852.2 |
| 도시자연공원  | -       | -        | -        | -        |
| 근 린 공 원 | 3       | 66,852.2 | 3        | 66,852.2 |
| 어린이공원   | -       | -        | -        | -        |
| 소 공 원   | -       | -        | -        | -        |
| 묘 지 공 원 | -       | -        | -        | -        |
| 체 육 공 원 | -       | -        | -        | -        |

■ 공원 결정 조서

| 구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합 계         |      |            | -                | 66,852.2 |                      |        |
| 기정 | ㉠           | ㉠호공원 | 근린공원       | 서구 오류동 1656-4    | 10,970.2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           | ㉡호공원 | 근린공원       | 서구 오류동 1665-2    | 10,869.3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           | ㉢호공원 | 근린공원       | 서구 오류동 1613-1 일원 | 45,012.7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바)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 단위시설

| 구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           | 변전소 | 서구 오류동 1636-1 | 3,993.1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사) 유수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합 계         | -   | -          | -              | 41,277.2 | -                    | -                    |
| 기정 | ㉑           | 유수지 | 저류시설       | 서구 오류동 1644-5  | 13,269.4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㉒           | 유수지 | 저류시설       | 서구 오류동 1636-2  | 7,280.1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기정 | ㉓           | 유수지 | 저류시설       | 서구 오류동 1611-4  | 20,613.0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br>(공원)과 중복결정 |
| 기정 | ㉔           | 유수지 | 저류시설       | 서구 오류동 1611-20 | 114.7    | -                    | 일반공업지역               |

## 아) 방수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적(㎡)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㉑           | 방수설비<br>(빗물펌프장) | 서구 오류동 1665-1 | 4,139.6 | 인고-147<br>(11.06.20) | 일반공업지역 |

## 자)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㉑           | 폐기물<br>처리시설 | 일반폐기물<br>처리시설 | 서구 오류동 1610-3 | 38,680.9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 차)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 구분 | 도면표시<br>번 호 | 시설명          | 시설의<br>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br>결정일           | 비 고    |
|----|-------------|--------------|--------------|---------------|----------|----------------------|--------|
| 기정 | ㉑           | 수질오염<br>방지시설 | 폐수종말<br>처리시설 | 서구 오류동 1610-4 | 40,088.4 | 인고-366<br>(08.12.29) | 일반공업지역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공장용지(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공장용지<br>(I) | I 1  | 13,044.7 | -   | -     | · 최소획지: 1,650㎡ |
|             | I 2  | 63,725.0 | -   | -     |                |
|             | I 3  | 40,506.1 | -   | -     |                |
|             | I 4  | 37,562.9 | -   | -     |                |
|             | I 5  | 7,950.8  | -   | -     |                |
|             | I 6  | 17,421.4 | -   | -     |                |
|             | I 7  | 21,347.6 | -   | -     |                |
|             | I 8  | 69,255.4 | -   | -     |                |
|             | I 9  | 47,416.5 | -   | -     |                |
|             | I 10 | 69,649.6 | -   | -     |                |
|             | I 11 | 36,203.9 | -   | -     |                |
|             | I 12 | 73,111.5 | -   | -     |                |
|             | I 13 | 28,939.4 | -   | -     |                |
|             | I 14 | 28,528.8 | -   | -     |                |
|             | I 15 | 43,343.3 | -   | -     |                |
|             | I 16 | 40,820.7 | -   | -     |                |
|             | I 17 | 43,038.1 | -   | -     |                |
|             | I 18 | 8,275.6  | -   | -     |                |
|             | I 19 | 20,770.7 | -   | -     |                |
|             | I 20 | 46,854.2 | -   | -     |                |
|             | I 21 | 26,441.9 | -   | -     | · 지식산업센터용지     |

< 표계속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공장용지<br>(I) | I 22     | 58,701.6    | -   | -             | · 최소획지<br>: 1,650㎡      |
|             | I 23     | 19,230.1    | -   | -             |                         |
|             | I 24     | 13,653.4    | -   | -             |                         |
|             | I 45     | 16,732.9    | -   | -             |                         |
|             | I 25     | 35,656.4    | -   | -             |                         |
|             | I 26     | 31,269.3    | -   | -             |                         |
|             | I 27     | 8,323.9     | -   | -             |                         |
|             | I 46     | 24,150.3    | -   | -             |                         |
|             | I 28     | 18,080.8    | -   | -             |                         |
|             | I 29     | 17,440.3    | -   | -             |                         |
|             | I 30     | 17,205.6    | -   | -             | · 임대부지<br>· 최소획지:1,650㎡ |
|             | I 31     | 16,586.5    | -   | -             | · 최소획지<br>: 1,650㎡      |
|             | I 37     | 11,335.9    | -   | -             |                         |
|             | I 38     | 18,140.4    | -   | -             |                         |
|             | I 39     | 6,641.2     | -   | -             |                         |
|             | I 32     | 29,649.1    | -   | -             |                         |
|             | I 33     | 11,435.2    | -   | -             |                         |
|             | I 47     | 21,902.1    | -   | -             |                         |
|             | I 34     | 31,078.1    | -   | -             |                         |
|             | I 35     | 42,749.2    | -   | -             |                         |
|             | I 36     | 15,806.7    | -   | -             |                         |
|             | I 40     | 3,876.3     | -   | -             |                         |
|             | I 41     | 10,957.0    | -   | -             |                         |
|             | I 42     | 21,769.6    | -   | -             |                         |
|             | I 43     | 28,754.6    | -   | -             |                         |
|             | I 44     | 7,806.3     | -   | -             |                         |
| I 48        | 23,146.9 | -           | -   | · 지식산업센터용지    |                         |
| I 49        | 25,546.5 | -           | -   | · 최소획지:1,650㎡ |                         |
| 합 계         |          | 1,371,834.3 | -   | -             |                         |

## 나)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         | 위치      | 면적(㎡) |                  |         |  |
| 단독주택<br>(H) | H 1  | 1,799.3 | ①       | 254.5 | · 합병불가<br>· 분할불가 |         |  |
|             |      |         | ②       | 241.5 |                  |         |  |
|             |      |         | ③       | 243.9 |                  |         |  |
|             |      |         | ④       | 244.1 |                  |         |  |
|             |      |         | ⑤       | 244.4 |                  |         |  |
|             |      |         | ⑥       | 243.0 |                  |         |  |
|             |      |         | ⑦       | 327.9 |                  |         |  |
|             | H 2  | 2,518.2 | ①       | 259.8 |                  |         |  |
|             |      |         | ②       | 247.5 |                  |         |  |
|             |      |         | ③       | 248.6 |                  |         |  |
|             |      |         | ④       | 247.7 |                  |         |  |
|             |      |         | ⑤       | 255.8 |                  |         |  |
|             |      |         | ⑥       | 261.6 |                  |         |  |
|             |      |         | ⑦       | 247.3 |                  |         |  |
|             |      |         | ⑧       | 247.3 |                  |         |  |
|             |      |         | ⑨       | 247.4 |                  |         |  |
|             |      |         | ⑩       | 255.2 |                  |         |  |
|             | H 3  | 1,376.1 | ①       | 281.8 |                  |         |  |
|             |      |         | ②       | 273.9 |                  |         |  |
|             |      |         | ③       | 273.8 |                  |         |  |
|             |      |         | ④       | 273.7 |                  |         |  |
|             |      |         | ⑤       | 272.9 |                  |         |  |
|             | 합 계  |         | 5,693.6 |       |                  | 5,693.6 |  |

다) 지원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지원시설용지<br>( S ) | S 2  | 18,408.6 | ①     | 2,028.7 | · 공동개발 권장, 합병은<br>인접한 획지에 한하여<br>허용<br>· 분할불가(단, 합병된<br>획지를 합병전의 획지<br>선으로 재분할 가능) |
|                 |      |          | ②     | 2,608.1 |  |
|                 |      |          | ③     | 674.0   |  |
|                 |      |          | ④     | 677.0   |  |
|                 |      |          | ⑤     | 627.9   |  |
|                 |      |          | ⑥     | 595.8   |  |
|                 |      |          | ⑦     | 642.1   |  |
|                 |      |          | ⑧     | 660.8   |  |
|                 |      |          | ⑨     | 660.0   |  |
|                 |      |          | ⑩     | 650.9   |  |
|                 |      |          | ⑪     | 596.0   |  |
|                 |      |          | ⑫     | 613.5   |  |
|                 |      |          | ⑬     | 672.3   |  |
|                 |      |          | ⑭     | 2,050.1 |  |
|                 |      |          | ⑮     | 984.6   |  |
|                 |      |          | ⑯     | 978.2   |  |
|                 |      |          | ⑰     | 945.0   |  |
|                 |      |          | ⑱     | 1,743.6 |  |
|                 | S 2a | 4,527.3  | ①     | 706.7   |  |
|                 |      |          | ②     | 520.1   |  |
|                 |      |          | ③     | 519.5   |  |
|                 |      |          | ④     | 512.5   |  |
|                 |      |          | ⑤     | 697.4   |  |
|                 |      |          | ⑥     | 520.9   |  |
|                 |      |          | ⑦     | 521.7   |  |
|                 |      |          | ⑧     | 528.5   |  |
|                 | S 2b | 4,662.5  | ①     | 526.9   |  |
| ②               |      |          | 520.1 |         |  |
| ③               |      |          | 519.4 |         |  |
| ④               |      |          | 800.6 |         |  |
| ⑤               |      |          | 514.0 |         |  |
| ⑥               |      |          | 521.1 |         |  |
| ⑦               |      |          | 521.8 |         |  |
| ⑧               |      |          | 738.6 |         |  |

< 표계속 >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지원시설용지<br>( S ) | S 3     | 7,919.6  | ①       | 3,959.2  | · 공동개발 권장, 합병은<br>인접한 획지에 한하여<br>허용<br>· 분할불가(단, 합병된<br>획지를 합병전의 획지<br>선으로 재분할 가능) |
|                 |         |          | ②       | 3,960.4  |  |
|                 | S 3a    | 8,580.8  | ①       | 885.7    |  |
|                 |         |          | ②       | 819.7    |  |
|                 |         |          | ③       | 823.1    |  |
|                 |         |          | ④       | 818.2    |  |
|                 |         |          | ⑤       | 1,456.2  |  |
|                 |         |          | ⑥       | 1,472.7  |  |
|                 |         |          | ⑦       | 1,012.6  |  |
|                 |         |          | ⑧       | 627.5    |  |
|                 |         |          | ⑨       | 665.1    |  |
|                 |         |          | S 3b    | 5,606.0  |  |
|                 | ②       | 560.1    |         |          |  |
|                 | ③       | 560.1    |         |          |  |
|                 | ④       | 560.0    |         |          |  |
|                 | ⑤       | 564.9    |         |          |  |
|                 | ⑥       | 557.8    |         |          |  |
|                 | ⑦       | 560.0    |         |          |  |
|                 | ⑧       | 560.2    |         |          |  |
|                 | ⑨       | 559.9    |         |          |  |
| ⑩               | 557.9   |          |         |          |  |
| S 5             | 2,868.6 | ①        | 1,434.8 |          |  |
|                 |         | ②        | 1,433.8 |          |  |
| 합 계             |         | 52,573.4 |         | 52,573.4 |  |

## 라) 재활용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재활용시설<br>(RE) | RE   | 9,620.7 | ①   | 9,620.7 |     |
| 합 계           |      | 9,620.7 | -   | 9,620.7 |     |

## 마) 주유소용지(변경)

## ■ 기정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주유소(O) | O 1  | 2,018.5 | ①   | 2,018.5 |     |
|        | O 2  | 2,441.5 | ①   | 2,441.5 |     |
| 합 계    |      | 4,460.0 | -   | 4,460.0 |     |

## ■ 변경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주유소(O) | O 1  | 2,441.5 | ①   | 2,441.5 |     |
| 합 계    |      | 2,441.5 | -   | 2,441.5 |     |

## 바) 주차장(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주차장(P) | P 1  | 3,765.3  | ①   | 3,765.3  |     |
|        | P 2  | 3,883.5  | ①   | 3,883.5  |     |
|        | P 3  | 1,650.2  | ①   | 1,650.2  |     |
|        | P 8  | 1,650.2  | ②   | 1,650.2  |     |
|        | P 4  | 3,023.8  | ①   | 3,023.8  |     |
|        | P 5  | 2,097.4  | ①   | 2,097.4  |     |
|        | P 6  | 2,694.2  | ①   | 2,694.2  |     |
|        | P 7  | 4,822.9  | ①   | 4,822.9  |     |
| 합 계    |      | 23,587.5 | -   | 23,587.5 |     |

## 사) 공영차고지(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공영차고지<br>(PP) | PP   | 9,998.7 | ①   | 9,998.7 |     |
| 합 계           |      | 9,998.7 | -   | 9,998.7 |     |

## 아) 우수지(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br>(㎡)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우수지<br>(WR) | WR 1 | 13,269.4  | ①   | 13,269.4 |     |
|             | WR 2 | 7,280.1   | ①   | 7,280.1  |     |
|             | WR 3 | 20,613.0  | ①   | 20,613.0 |     |
|             | WR 4 | 114.7     | ①   | 114.7    |     |
| 합 계         |      | 41,277.2  | -   | 41,277.2 |     |

주) ㉠호 우수지(WR3)은 ㉠호 공원내 시설과 연계설치(A = 20,613.0㎡)

## 자) 변전소(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변전소<br>(TS) | TS   | 3,993.1 | ①   | 3,993.1 |     |
| 합 계         |      | 3,993.1 | -   | 3,993.1 |     |

## 차) 방수설비(빗물펌프장)(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방수설비<br>(RP) | RP   | 4,139.6 | ①   | 4,139.6 |     |
| 합 계          |      | 4,139.6 | -   | 4,139.6 |     |

## 카)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폐기물처리시설<br>(W) | W    | 38,680.9 | ①   | 38,680.9 |     |
| 합 계            |      | 38,680.9 | -   | 38,680.9 |     |

## 타) 폐수종말처리장(변경 없음)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br>(㎡)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폐수종말처리시설<br>(WDP) | WDP  | 40,088.4  | ①   | 40,088.4 |     |
| 합 계               |      | 40,088.4  | -   | 40,088.4 |     |

## 파) 공공문화·복지시설(신설)

|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br>(㎡) | 획 지 |         | 비 고 |
|-------------------|------|-----------|-----|---------|-----|
|                   |      |           | 위치  | 면적(㎡)   |     |
| 공공문화·복지시설<br>(CW) | CW1  | 2,018.5   | ①   | 2,018.5 |     |
| 합 계               |      | 2,018.5   |     | 2,018.5 |     |

###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변경)

#### 1) 공장용지(변경 없음)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장<br>용지<br>(I) | I5<br>I9<br>I11<br>I32<br>I33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li> </u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률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li> </ul>                             |   |  |
|                 |                               |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li> <li>•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li> </ul> |   |  |
|                 |                               | 색 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li> </ul>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li> </ul>                   |  |
|                 |                               |       | 강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li> </ul>                   |  |
| 건축선             | -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 공장<br>용지<br>(I) |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7</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8</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3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3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3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7</div> </div>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li> <li>•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표준산업분류- 383)을 영<br/>위하기 위한 시설</li> </u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률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li> </ul>                             |  |  |
|                 |   |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li> <li>•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li> </ul> |  |  |
|                 |   | 색 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li> </ul>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li> </ul>  |  |
|                 |   |       | 강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li> </ul>  |  |
|                 |   | 건축선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장<br>용지<br>(I)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I1</div><b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I4</div><b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I29</div>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li> </u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륜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li> </ul>                             |   |  |
|                 |  |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li> <li>•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li> </ul> |   |  |
|                 |  | 색 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li> </ul>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li> </ul>                   |  |
|                 |  |       | 강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li> </ul>                   |  |
| 건축선             | -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장<br>용지<br>(I) | I3<br>I44 | 용 도   | 허용<br>용도   | •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 |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률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  |
|                 |           | 형 태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br>•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           | 주 차   |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br>•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  |
| 건축선             | -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장<br>용지<br>(I) |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8</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3</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6</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17</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4</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27</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3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1</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2</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I49</div> </div>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li> </u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륜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li> </ul>                             |   |  |
|                 |   |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li> <li>•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li> </ul> |   |  |
|                 |   | 색 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li> </ul>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li> </ul>                   |  |
|                 |   |       | 강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li> </ul>                   |  |
|                 |   | 건축선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장<br>용지<br>(I) |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15</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18</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19</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23</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39</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40</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2px;">I43</div> </div>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li> </u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륜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li> </ul>                             |   |  |
|                 |  |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li> <li>•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li> </ul> |   |  |
|                 |  | 색 채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li> </ul>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li> </ul>                   |  |
|                 |  |       | 강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li> </ul>                   |  |
| 건축선             | -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 공장<br>용지<br>(I) | I37<br>I38 | 용 도   | 허용<br>용도   | •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 |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륜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  |
|                 |            | 형 태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br>•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            | 주 차   |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br>•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  |
| 건축선             | -          |       |  |   |  |

| 도면<br>번호        | 위<br>치                              | 구<br>분      | 계<br>획<br>내<br>용  |   |  |
|-----------------|-------------------------------------|-------------|---|---|--|
| 공장<br>용지<br>(I) | I 48                                | 용<br>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li> <li>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25)에 한한다.</li> <li>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li> </o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이외의 용도</li> <li>*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li> </ul>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  |
|                 |                                     | 건<br>폐<br>율 | 70%이하   |   |  |
|                 |                                     | 용<br>적<br>률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br>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  |
|                 |                                     | 형<br>태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  |
|                 |                                     | 주<br>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 관련조례 준수</li> <li>• 기계식 주차장 불허</li> <li>•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li> </ul> |   |  |
|                 |                                     | 색<br>채      | 주<br>조<br>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br>조<br>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  |
| 강<br>조<br>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             |   |   |  |
| 건<br>축<br>선     | -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장<br>용지<br>(I) | I 21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산업센터</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6의 시설을 말함</li> <li>2. 지식산업센터의 입주가능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표준산업분류;25)에 한한다.</li> <li>3. 기타사항은 관련법(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등)을 따른다</li> </o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이외의 용도</li> <li>* 지식산업센터 내 불허용도</li> </ul>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장의사, 총포판매사, 동물병원, 단란주점, 의약품도매점, 안마시술소·안마원 용도는 불허)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륜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  |
|                 |                                     | 형 태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  |   |  |
|                 |                                     | 주 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장용: 시설면적 190㎡당 1대, 기타용 : 관련조례 준수</li> <li>• 기계식 주차장 불허</li> <li>•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li> </ul>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       |   |   |  |
| 건 축 선           | -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공장<br>용지<br>① | I30 | 용 도   | 허용<br>용도   | • 공장<br>(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의<br>규정에 의한 공장) |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 폐 율 | 70%이하  |   |  |
|               |     | 용 적 률 | 35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배 치   | •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   |   |  |
|               |     | 형 태   | •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사용<br>• 옥상부분은 냉각탑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   |  |
|               |     | 주 차   | • 시설면적 190㎡당 1대, 기계식주차장 불허<br>• 대형주차면(3.25m × 14.0m)을 전체 주차면의 5% 이상 확보하며,<br>최소 1개면 이상 확보할 것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공장용지의 강조색(권장)                 |  |
| 건 축 선         | -   |       |  |   |  |

2) 단독주택용지 (변경 없음)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단<br>독<br>주<br>택<br>용<br>지<br>(H) | H1 ~ H3   | 용<br>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 (다가구주택포함)</li> <li>• 1층에 한하여 제1·2종 근린생활시설<br/>(단,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4호 가목 및 나목에 한함)</li> </ul> |  |
|                                   |   |             | 불허<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
|                                   |   | 건<br>폐<br>율 | 60%이하  |  |  |
|                                   |   | 용<br>적<br>률 | 200%이하   |  |  |
|                                   |   | 높이(층)       | 3층이하   |  |  |
|                                   |   | 배<br>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외부: 건축설비 노출 금지</li> <li>• 담장: 1.5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li> </ul> |  |  |
|                                   |   | 형<br>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li> </ul>                       |  |  |
|                                   |   | 주<br>차      | 주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주조색(권장)</li> </ul>  |  |
|                                   |   |             | 보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보조색(권장)</li> </ul>  |  |
|                                   |   |             | 강조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단독주택용지의 강조색(권장)</li> </ul>  |  |
| 색<br>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로1-1, 소로1-2, 소로3-1호선변 건축한계선 1m</li> </ul> |             |  |  |  |

3) 지원시설용지 (변경 없음)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 지 원<br>시 설<br>용 지<br>(S)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S2</div> -<br>①~⑱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li> <li>• 종교시설(납골당 제외)</li> <li>• 판매시설</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li> <li>•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li> </ul>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7층이하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li>•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투시형 서터: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li> </ul> </li>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li> <li>•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li> </ul> |   |  |
|                          |  | 주 차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로3-23, 대로 3-118, 중로1-140, 중로2-663, 중로2-665호선변 건축한계선 3m</li> <li>•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2m</li> </ul>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지 원<br>시 설<br>용 지<br>(S)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2a</div> -<br>①~⑧,<b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S2b</div> -<br>①~⑧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의료시설(장례식장 제외)</li> <li>• 종교시설(납골당 제외)</li> <li>• 판매시설</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li> <li>•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li> </ul>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7층이하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li>•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서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투시형 서터: 서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li> </ul> </li>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li> <li>•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li> </ul> |   |  |
|                          |   | 주 차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  |
| 건축선                      | • 중로2-665, 중로3-249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 지 원<br>시 설<br>용 지<br>(S) | S3<br>-<br>①, ②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li> <li>• 판매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li> <li>•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li> </ul>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7층이하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li>•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li> </ul> </li>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li> <li>•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li> </ul> |  |  |
|                          |                               | 주 차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건축선                      | • 광로3-23,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 지 원<br>시 설<br>용 지<br>(S) | S3a<br>-<br>①~⑨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li> <li>• 판매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li> <li>•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li> </ul>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7층이하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li>•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li> </ul> </li>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li> <li>•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li> </ul> |  |  |
|                          |   | 주 차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건축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로3-23, 중로1-364, 중로2-666호선변 건축한계선 3m</li> <li>• 중로3-나호선변 건축한계선 2m</li> </ul>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 지 원<br>시 설<br>용 지<br>(S) | S3b<br>-<br>①~⑩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li> <li>• 판매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공장(지식산업센터에 한함)</li> <li>•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li> </ul>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7층이하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li>•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 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li> </ul> </li>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li> <li>•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li> </ul> |  |  |
|                          |                                      | 주 차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  |
| 건축선                      | • 중로2-666호선, 중로3-나호선변 건축한계선 3m       |       |  |  |  |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지 원<br>시 설<br>용 지<br>(S) | S5<br>①, ②                              | 용 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에 한함)</li> <li>• 판매시설</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교육연구시설(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연구소에 한함)</li> <li>• 자동차 관련시설(폐차장 제외)</li> </ul>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7층이하  |  |  |
|                          |   | 배 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의 벽면은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제외)변과 평행</li> <li>• 공동건축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결정도 참조</li> </ul>   |  |  |
|                          |   | 형 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층부(1층)는 투시형 벽면이나 투시형 셔터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시형 벽면: 도로에 접한 벽면에 한하여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li> <li>-투시형 셔터: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으로 처리 (보행자전용도로와 접하는 부분포함)</li> </ul> </li> <li>• 건축물의 전후면과 측면은 동일계통의 재료, 색채 사용</li> <li>• 옥상부분은 냉각탑 등 건축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옥상정원 등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권장</li> <li>• 도로변 외벽으로 도시가스등 설비배관의 노출은 금하고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li> </ul> |  |  |
|                          |   | 주 차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  |
|                          |   | 색 채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건축선                      | • 대로3-117, 중로2-671, 중로2-672호선변 건축한계선 5m |       |   |  |  |

## 4) 재활용시설용지(변경 없음)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재활용<br>시설<br>용지<br>(RE) | RE<br>① | 용 도   | 허용<br>용도                             | • 재활용산업<br>(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용적률   | 350%이하                               |   |
|                         |         | 높이(층) | -                                    |   |
|                         |         | 주 차   |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기계식주차장 불허 |   |

## 5) 주유소용지(변경)

## ■ 기 정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
| 주유소<br>용 지<br>(S) | O 1<br>~<br>O 2<br>- ①                                     | 용 도   | 허용<br>용도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부대시설 포함)<br>•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부대시설 포함)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5층이하                      |  |  |
|                   |  | 배 치   |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  |  |
|                   |  | 색 채   | 주조색                       | • 『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강조색               | • 『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  |
| 건축선               | • O1: 광로3-23, 대로3-118호선변 3m<br>• O2: 광로3-23, 중로1-364호선변 5m |       |                           |  |  |

■ 변경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 계획내용   |  |
|-------------------|--|-------|---------------------------------------|--|--|
| 주유소<br>용 지<br>(S)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01</div><br>- ① | 용 도   | 허용<br>용도                              |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부대시설 포함)<br>•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부대시설 포함) |  |
|                   |  |       | 불허<br>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5층이하                                  |  |  |
|                   |  | 배 치   |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  |  |
|                   |  | 색 채   | • 정유업체 고유 색채 적용 가능                    |  |  |
|                   |  |       | • 정유업체 고유 색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의 색채기준 준수  |  |  |
|                   |  |       | 주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보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강조색               | • 『첨부#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  |
| 건축선               | • 광로3-23, 중로1-364호선변 5m  |       |                                       |  |  |

6) 주차장(변경 없음)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 계획내용  |  |
|------------|--|-------|--|---|--|
| 주차장<br>(P)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1</div><br>~<br><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display: inline-block;">P8</div><br>① | 용 도   | 허용<br>용도   |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포함)<br>• 근린생활시설 도입시 비율은 연면적의 30%이내<br>[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 제외), 판매시설(상점 및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함), 운동시설(운동장,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건폐율   | 90%이하  |   |  |
|            |  | 용적률   | 900%이하   |   |  |
|            |  | 높이(층) | -  |   |  |
|            |  | 형태    | •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시 지상부에 일부 주차장 설치<br>• 주차구획은 교통영향평가 협의결과를 반영할 것<br>단, 불가피한 경우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통하여 변경가능 |   |  |

## 7) 공영차고지(변경 없음)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공 영<br>차고지<br>(PP) | PP - ① | 용 도   | 허용<br>용도 | • 자동차관련시설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 및 주차장에 한함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용적률   | 350%이하   |  |
|                    |        | 높이(층) | -        |  |

## 8) 공공문화·복지시설(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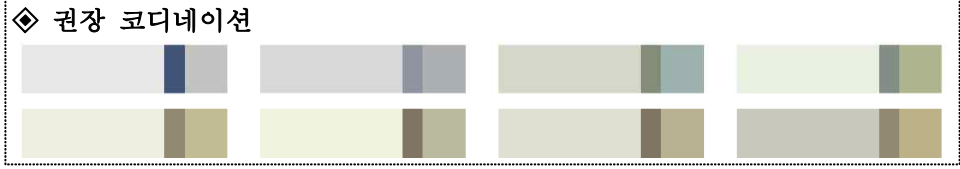

| 도면<br>번호                          | 위 치                       | 구 분   | 계획내용   |  |  |
|-----------------------------------|---------------------------|-------|--|--|--|
| 공공<br>문화<br>·<br>복지<br>시설<br>(CW) | CW1<br>- ①                | 용도    | 허용<br>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게음식점 및 계과점</li> <li>-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관</li> <li>-제13호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li> </ul> </li> </ul> |  |
|                                   |                           |       | 불허<br>용도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                           | 기타    | -  |  |  |
|                                   |                           | 건폐율   | 70%이하  |  |  |
|                                   |                           | 용적률   | 400%이하   |  |  |
|                                   |                           | 높이(층) | 5층이하   |  |  |
|                                   |                           | 배 치   | • 각 시설별 관계법규에 따른 배치기준을 준수  |  |  |
|                                   |                           | 형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벽의 재료, 형태 등</li> <li>-건축물의 전면과 측·후면의 구별 없이 재료 또는 건축적 입면이 동일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li> <li>• 옥상녹화 및 옥상휴게공간 설치 권장</li> <li>• 장애인을 위한 계획</li> <li>-사회복지시설용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해당 주차장 관련조례 규정을 적용한다.</li> </ul> |  |  |
|                                   |                           | 색 채   | 주조색  |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주조색(권장)  |  |
|                                   |                           |       | 보조색  |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보조색(권장)  |  |
|                                   |                           |       | 강조색  | • 『붙임# 1.건축물별 추천배색』 중 지원시설용지의 강조색(권장)  |  |
| 건축선                               | • 광로3-23호선, 대로3-118호선변 3m |       |  |  |  |

## 다.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 (1)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 교통처리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지방교통영향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검단 일반산업 단지 교통영향평가 내용에 따름</li> <li>•주차장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확장형 주차단위구획(2.5m×5.1m) 20%이상 확보할 것</li> </ul> |       |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옥외광고물에 관한 기준 제시(권장)</li> <li>- “첨부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참조</li> </ul>  |       |
| 경관에 관한 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형 건축물에 의한 대형입면은 시각적 분절 등의 방법으로 위압감을 감소시키고 미관을 향상시킬 것</li> <li>•차가운 이미지의 공장시설은 가급적 녹지를 통하여 차폐</li> </ul>                                  | 권장 사항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함<br/>(관련법이 변경 시 강화된 규정을 따른다)</li> </ul>  |       |

붙임 1] 건축물별 추천배색 (참조: 인천광역시 색채디자인 기본계획 2010)

| 구 분                   | 색채 사용범위*  |
|-----------------------|---|
| 공장용지<br><br>(공업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5~9.5 / 채도4 이하</li> <li>• 보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9 / 채도5 이하</li> <li>• 강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7 / 채도5 이하</li> </ul> <p>◆ 권장 코디네이션</p>           |
| 지원시설용지<br><br>(준공업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5~9.5 / 채도4 이하</li> <li>• 보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9 / 채도6 이하</li> <li>• 강조: 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7 / 채도6 이하</li> </ul> <p>◆ 권장 코디네이션</p>          |
| 단독주택용지<br><br>(주거지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붕: RP, R, YR, Y / 명도4 이하 / 채도3 이하</li> <li>• 주조: 재료 고유색 권장.<br/>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 이상 / 채도4 이하</li> <li>• 보조: 재료 고유색 권장.<br/>N, R, YR, Y, GY, G, BG, B, PB, P, RP / 명도4 이상 / 채도4 이하</li> </ul> <p>◆ 권장 코디네이션</p>  |

※ 색채 사용범위는 Munsell표기임

## 붙임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 구 분           | 단독주택용지<br>(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지원시설용지   | 공장용지   |
|---------------|--|--|--|
| 수 량           | • 1개 업체당 2개 이하(단 각각부에 한하여 3개 이하로 허용)   |  |  |
| 가로형<br>간 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 입체형(권장)</li> <li>• 위치: 1층 이하로 제한</li> <li>•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li> </ul> </li> <li>•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90%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 입체형(권장)</li> <li>• 위치: 5층 이하로 제한</li> <li>•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li> </ul> </li> <li>•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90%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태: 입체형(권장)</li> <li>• 위치: 5층 이하로 제한</li> <li>•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물의 폭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됨</li> </ul> </li> <li>•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윗층과 아래층의 창문간 세로벽면 폭의 80% 이내로 하여 1m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ul> |
| 돌<br>출<br>간 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2층이하</li> <li>•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벽면에서 0.8m 이하</li> </ul> </li> <li>•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m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0m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3층 이하</li> <li>•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벽면에서 0.9m이하</li> </ul> </li> <li>•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m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0m 이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5층 이하</li> <li>• 가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벽면에서 1.0m이하</li> </ul> </li> <li>• 세로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m를 초과할 수 없음</li> </ul> </li> <li>•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5m 이상</li> </ul>                        |
| 지주이용<br>간 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주이용간판 설치 불허</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주출입구</li> <li>• 가로크기: 1.0m이하</li> <li>• 세로크기: 5.0m이하</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주출입구</li> <li>• 가로크기: 1.0m이하</li> <li>• 세로크기: 5.0m이하</li> </ul>   |
| 기 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광고물은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의 범위(2개)내에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관련법에 따라 설치</li> <li>• 창문을 이용한 광고문안 및 업체명 설치와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설치를 금지 (단, 지원시설용지는 옥상간판을 허용)</li> <li>• 간판의 위치에 관하여 1층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층으로 적용</li> <li>• 건물보호 및 무질서한 광고물 부착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시 간판부착 위치를 첨부토록 함</li> <li>•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준용함</li> </ul> |  |  |

## 7. 관계도서의 열람

(관계도서는 다음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 관련 도서: 『별첨』 (게재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과 (전화 032-560-5772)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70호

## 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산지관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1. 9.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1. 필지별 세부내역서 : 붙임 참조

| 변경유형      | 소재지                | 해제면적(m <sup>2</sup> ) | 도면번호                |
|-----------|--------------------|-----------------------|---------------------|
| 임업용산지→준보전 |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 137-7 | 1,422.42              | NJ52-9-10-078^김포078 |

#### 2. 관계도면 : 생략 (열람 장소에 있는 도면과 토지조서와 같으며, 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같음)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산지정보시스템(<http://www.forestland.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 3. 열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032-560-4794)에 보전산지 해제 표시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부 칙

-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보전산지 해제 도면과 토지조서가 상이할 경우 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붙임 : 보전산지 지정해제 필지별 세부내역서 1부. 끝

[별지 제6호 서식]

## 보전산지해제 세부내역(7-1-3 유형)

(단위 : m)

| 일련<br>번호 | 변경유형      | 소재지   |    |     |        | 면적       |          |          | 전용용도 | 도엽명 및<br>도엽번호       |
|----------|-----------|-------|----|-----|--------|----------|----------|----------|------|---------------------|
|          |           |       |    |     |        | 지적       | 기 지정     | 해제대상     |      |                     |
| 1        | 공익용산지→준보전 | 인천광역시 | 서구 | 시천동 | 137-7전 | 1,422.42 | 1,422.42 | 1,422.42 |      | NJ52-9-10-078^김포07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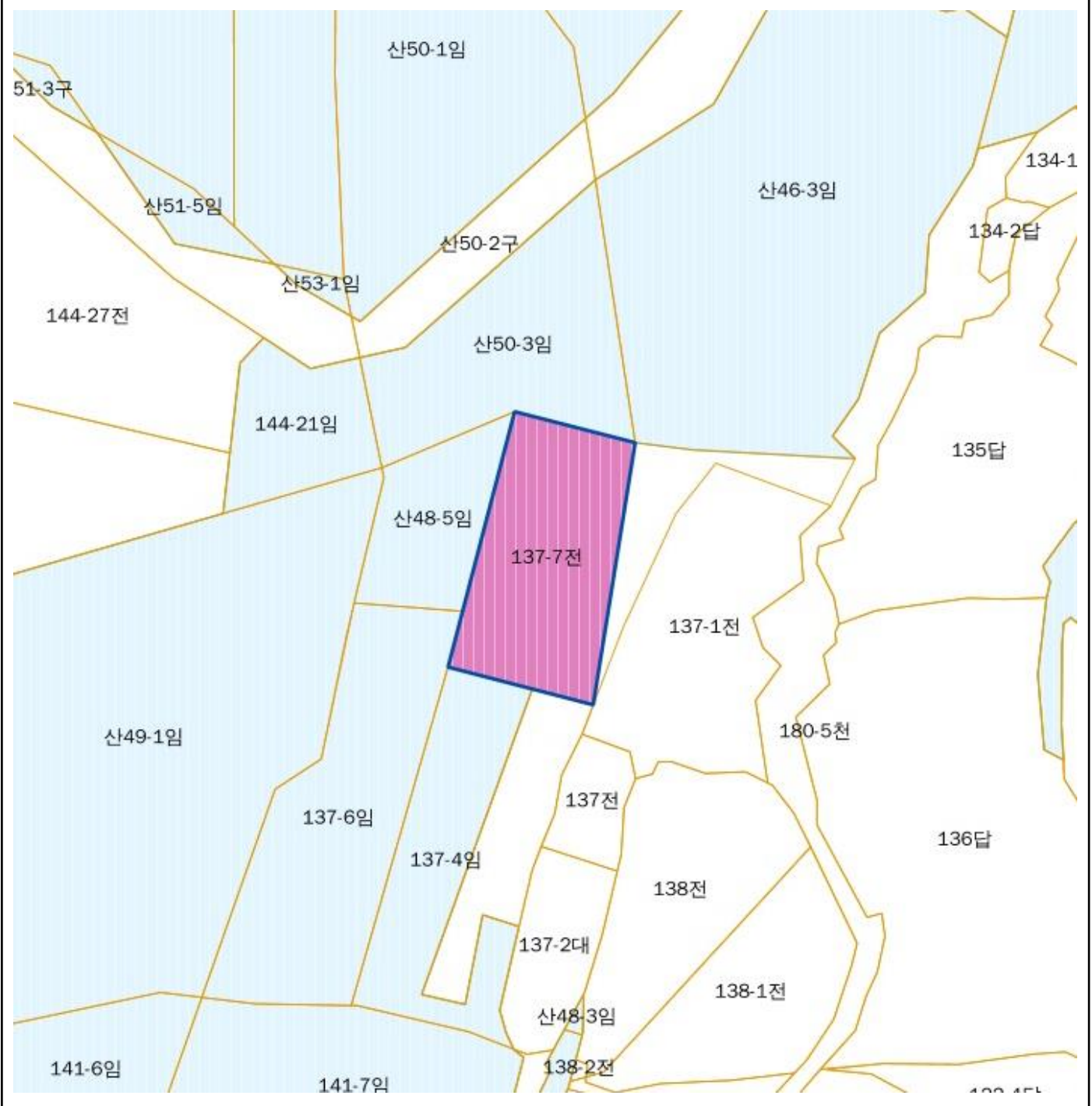
<작성요령>







- 7-1-3 유형 :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해제 대상이 된 산지
- 변경유형은 임업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 공익용산지에서 해제되는 대상인지를 구분하여 작성
- 전용용도는 골프장( ), 스키장( ), 산업단지( ), 택지( ) 등으로 작성하고 ( )내는 허가?협의?신고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예시) 골프장(협의), 병원(허가), 농가주택(신고)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

# 산 지 구 분 도

(보전산지[임업용(기타임업용)]해제 ▶ 준보전)

(도엽번호 NJ52-9-10-078^김포078)



| 범 례   |       |   |      |
|---|-------|---|------|
|  | 공익용산지 |  | 지적선  |
|  | 임업용산지 |  | 행정경계 |
|  | 준보전산지 |  | 대상지역 |

지정권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고시일자: 2021-09-27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제2021-170호

- 비 고
1. 측량의 기준 : 한국측지계
  2. 투영법 : 횡단 메르카토르도법(타원체는 베셀타원체)
  3. 높이의 기준 : 인천만의 평균해면
  4. 본 지도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지적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5. 본 지도는 산림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복제, 국외반출, 임의개재, 편집을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6. 본 지도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산지정보시스템(<http://flis.forestland.go.kr>)  
 산림청(<http://www.forest.go.kr>)